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식회사 빅스타건설 (김지윤)	경상북도 경주시 충현로 13, 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 지연)	과태료 (금180,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